

제천시세감면조례증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15
----------	-----

제출년월일 2000.

제출자 제천시장

□ 제안이유

- 지방세감면과 관련된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른 감면조례의 조문정리와 세제지원이 불필요한 대상의 과세전환 및 기타 해석이 불분명하거나 세정운영상 발생된 문제점을 보완정비하여 감면조례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 주요골자

-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 확대
-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확대
-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 확대
- 주차전용 건축물과 주차전용 토지에 대한 감면규정 삭제
- 기타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문의 정리

※제천시세감면조례증개정조례안 참조

- 붙임 : 1. 제천시세감면조례증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제천시세감면조례증개정조례(안)

제천시세감면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목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을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등에 대한 감면”으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중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고 있는 중상이자”를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및 그 유족과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로 하며, 동조제2항 본문중 “직계 존·비속명의로 등록”을 “국가유공자의 직계존·비속, 국가유공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국가유공자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 본인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하고, “취득한”을 “감면신청하는”으로 하고, 동조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제1호 및 제3호중 “허가를 받은” 을 “등록을 한”으로 각각 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로부터 1년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

제4조(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제1항 본문중 “직계 존·비속명의로 등록”을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하고, "취득한"을 "감면신청하는"으로 하며, 면서중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로부터 1년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 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중 "허가를 받은" 을 "등록을 한"으로 각각 한다.

제9조중 "교육법" 을 "교육기본법" 으로 한다.

제10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10조(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제13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단서중 "임대주택법"을 "임대주택법 제12조 규정"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중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가공지원대상자로 지정된 자로서 가공품생산을 위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 를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가공업자" 로 하고, 동조제3항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제29조제2항”을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 2”로 하며, “동법시행규칙 제26조”를 “동법제28조의5”로 한다.

제16조와 제1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4조의3(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본문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제4항제1호·제2호 및 동조 제5항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함에 있어서는 동법 제9조제4항 단서 및 제5항 단서”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 및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동법 제121조의2제4항 단서 및 제5항 단서로 하고, 단서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2조제3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3항”으로 하며, 제1호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제4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으로 하고, 제2호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제5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으로 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적용례) 제2조 및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등록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기 준 안
<p><u>제2조(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 ①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고 있는 중상이자가 소유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u></p> <p><u>②국가유공자동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명의로 등록하여 보궐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취득한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등록말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단서 신설></u></p>	<p><u>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등에 대한 감면) ①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및 그 유족과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u></p> <p><u>②-----</u></p> <p><u>-----국가유공자의 직계존·비속 국가유공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국가유공자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u></p> <p><u>-----감면신청하는-----</u></p> <p><u>-----. 다만,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로부터 1년이내에 사망·후임·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u></p>
1. ~ 4.(생략)	1. ~ 4.(현행과 같음)

내 용	개 정 카
<p>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p>	<p>③----- ----- ----- ----- -----</p>
<p>1.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관리 사업의 <u>허가를 받은</u>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 ----- 등록을 한 ----- ----- ----- ----- -----</p>
<p>2. (생략)</p>	<p>2. (현행과 같음)</p>
<p>3.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u>허가를 받은</u> 자동차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p>	<p>3. ----- 등록을 한 ----- ----- -----</p>
<p>4. (생략)</p>	<p>4. (현행과 같음)</p>
<p>제4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u>직계존·비속명</u>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u>취득한</u>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p>	<p>제4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 ----- ----- ----- -----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 ----- ----- 감면신청하는 -----</p>

질문	답변
등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 세를 면제한다. 다만,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 용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 ----- <u>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로부터 1년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u>
1. ~ 4.(생략)	1. ~ 4.(현행과 같음)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②----- ----- ----- ----- -----
1.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관리 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등록을 한 ----- ----- ----- ----- ----- -----
2. (생략)	2. (현행과 같음)
3.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동차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3. ----- 등록을 한 ----- ----- ----- -----
4. (생략)	4. (현행과 같음)

현 행 법	개 정 안
<p>제9조(사립학교의 교육용재산에 대한 감면) <u>교육법</u>에 의한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학생들의 실험·실습용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와 선박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p>	<p>제9조(사립학교의 교육용재산에 대한 감면) <u>교육기본법</u> -----</p> <p>-----</p> <p>-----</p> <p>-----</p>
<p>제10조(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5로 하고, 도시계획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23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로 하며,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 15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리과세내상으로 하여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p>1. ~ 3. (생략)</p> <p>4. 전통건조물보존법에 의하여 지정된 전통건조물과 그 부속토지 및 전통건조물 보존지구안의 부동산</p>	<p>제10조(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p> <p>1. ~ 3. (현행과 같음)</p> <p>4. <삭 제></p>
<p>제13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교부일</p>	<p>제13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p> <p>-----</p> <p>-----</p> <p>-----</p>

문	행	개	정	화
<p>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2세대이상을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한다)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용 부동산을 <u>임대주택법</u>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의무기간내에 임대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추징한다.</p> <p>1. ~ 3. (생략)</p>				
<p>제14조(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와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지정신청서에 첨부한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참여자 및 <u>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u> 제5조의 규정에 의</p>			<p><u>임대주택법</u> 제12조 규정</p> <p>1. ~ 3. (현행과 같음)</p>	
			<p>제14조(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p> <p>-- <u>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u>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가공업자--</p>	

내 용	기 경 약
<p><u>하여 산지가공지원대상자로 지정된 자로서 가공품생산을 위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u></p>	
(2) (생략)	
<p><u>③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 공장의 설립승인을 얻어 당해 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분양·임대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동법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u></p>	<p>(2) (현행과 같음)</p> <p><u>③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2</u></p> <p><u>동법 제28조의5</u></p>

현행 규정	개정안
<p>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 15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대상으 로 하여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 을 경감한다.</p>	<p>----- ----- ----- ----- ----- -----</p>
<p><u>제16조(주차전용 건축물 등에 대한 감면)</u>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의무가 없는 자가 주차장별 <u>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를 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으로서</u>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주차대수 20대이상의 주 차전용 건축물(근린생활시설등 주 차시설이 아닌 용도로 사용되는 부 분을 제외한다)과 그 부속토지(지방 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을 초과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주차장 설치일 또는 사용 승인서교부일 이후 최초 과세기준일 부터 5년간 재산세·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면제한다. 다만, 주차영업을 최초 로 개시한 날부터 5년이내에 정당 한 사유없이 주차시설이외의 용도 (일부를 주차시설 이외의 용도에</p>	<p>제16조 <삭제></p>

현 행	개 정 안
<p><u>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말한다)에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추징한다.</u></p>	
<p>제17조(주차전용 토지에 대한 감면) <u>주차장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주차대수 20대이상의 주차전용 토지와 그 부대시설로서 주차장의 1년간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이상인 것에 한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주차장설치일 이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주차장의 연간수입금액과 부동산가액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연간수입금액은 과세기준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직전년도 6월 1일부터 당해연도 5월 31일까지)의 수입금액으로 한다. 2. 연간수입금액의 계산기간중에 사업을 개시하는 등 그 계산기간이 	<p>제17조 <삭 제></p>

내 용	기 관 부
<p><u>365일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연간수입금액으로 한다.</u></p> <p style="text-align: center;"><u>영업기간중의 수입금액</u> $\text{연간수입금액} = \frac{\text{영업기간(일수)}}{365}$</p> <p><u>3. 토지에 대한 부동산가액은 지가 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등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로 하고, 건축물에 대한 부동산가액은 시가표준액 또는 법원장부가액중 높은 가액으로 한다.</u></p>	
<p>제24조의3(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제천시에서 외국인투자 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외국인 투자 촉진법 제9조제4항제1호·제2호 및 동조제5항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함에 있어서는 등법 제9조제4항 단서 및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p>	<p>제24조의3(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 ----- ----- 조세특례 제한법 제121조의2 제4항 및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등법 제121조의2제4항 단서 및 제5항 단서 ----- -----</p>

내 용	개 친 인
다음 각호에 정한 기준일부터 (7)년 간은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 년간은 50%를 경감한다. 다만, <u>외국인투자촉진법 제12조제3항</u> 의 규정에 의한 추징대상이 된 경우에 는 감면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추징한다. 1. <u>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제4항</u> 에 의한 감면은 사업개시일 2. <u>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제5항</u> 에 의한 감면은 재산을 취득한 날	----- ----- ----- <u>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3항</u> ----- ----- 1. <u>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u> ----- 2. <u>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u> -----